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VIII): 종합

황동연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남북한은 상호 경제 교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경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남북 경험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동시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경제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기반이 다소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1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사되는 등 남북한 경제 협력은 점차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 교역에서 더 발전하여 위탁 가공 및 투자 협력 사업으로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를 즈음하여 본 지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수 제정되어 있는 북한의 외국 투자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사전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애매모호한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체계

조 국이 1979년 8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제정한 뒤, 북한도 이에 고무되어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북한의 최초의 외국인 투자 유치법이다. 그 이후 1985년 5월까지 북한은 「합영법 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등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

나 실제 투자 유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984년부터 1992년 7월까지 체결된 계약 140여 건 가운데 116 건, 1억 5,000만 달러가 조총련 기업이 투자한 사업이다.

부진한 투자 유치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

고 출입국시 무사증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합영법」과는 달리 남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도 합영 기업·합작 기업·외국인 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1997년 6월 통화와 환율체계 변경, 자영업 허용과 자유시장 개설, 독립채산제 실시, 외국 기업들의 투자·무역 업무 지원 차원에서 인재 개발을 위한 '나진기업학교' 개설,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의 나진·선봉지대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 유치를 위한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말 현재 나진·선봉지대의 투자 계약은 총 111건, 7억 5,077만 달러에 불과하며, 특히 실행 기준으로는 투자

가 77건, 5,792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투자 유치가 부진한 이유로는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 북한의 경제난, 북한 내수 시장의 미미, 상품 교역에 불리한 지리적 거리, 북한이 가진 경제적 高위험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對북한 투자의 위험성일 것이다. 현재 미국이 對북한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하여, 해외 기업들의 북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장애 요인들은 대북한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제도적 측면에서는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이 커다란 장애 요인

〈표 1〉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 해제 및 비해제 대상

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 상품과 원재료의 수입 - 미국 기업 및 자회사들의 소비재, 금융 서비스, 비군사 관련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재수출 -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사회간접자본·여행 관광업 등에 대한 투자 - 미국 국적인의 북한인에 대한 송금 - 미국 국적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비군사 관련 화물의 북한 유출입 - 북한과 미국간의 상업적 비행 	
비해제 대상	테러 지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품 물자 품목에 있는 물품과 기술의 수출 -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 이중 목적 사용 가능한 물품의 허가없는 수출 - 해외지원법·농업교역개발법·수출입법·평화봉사단법에 따른 지원 - 국제 금융 기관에 의한 북한 용자 지원 - 전리품의 이전 - 대미 수출에서 면세 특혜 - 재무장관의 허가없는 미국인과 북한 정부간의 금융 거래 - 북한내 발생한 기업·개인 소득에 대한 해외 소득 면제 요구
	미사일통제법 등 비확산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對북한 수출 통제 품목의 수출을 위한 개인별 허가 불허 - 특정 북한 기관의 미국 정부간 계약 불허 및 생산 물품의 미국 수입 금지 - 미사일 장비 기술 관련 물품, 항공 기술 개방과 생산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對북한 수출 금지 및 미국 수입 금지 -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관련 품목의 對북한 수출 금지

으로 남아있다.

북한에 유리한 법 규정

투자법 규정의 문제점

법 규정 상의 불명확성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법 규정 상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법 규정의 불명확성은 북한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북 진출을 방해하는 악영향을 미친다.

두번째 문제점은 북한에 유리한 법 규정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 당국의 승인, 사전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 규정들 및 자의적 해석 가능한 규정들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경영 활동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타 국가에 비해 불리한 법 규정

북한은 중국·베트남에 비해 생산 요소 비용과 세제 혜택 부문 등에서는 다소 유리한 편이나, 경영 관리 상의 제약과 정치·사회적 안정성, 인프라 등 기반 시설, 시장 발전성 측면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의 투자 유치 경쟁국에 열악한 실정이다.

(표 2) 법 규정의 불명확성

항목	문제점
설립 및 출자	-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조항의 애매 - 투자 가능·장려·금지 분야가 법규마다 차이가 나며 내용이 애매모호함 - 설립 사전 심사 및 승인 부서가 명확하지 않음
노동 관리	- 직업동맹 조직 역할의 불분명(예, 파업 가능성 언급 무) - 임금 및 사회보험과 관련한 지급 방식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경영 활동	- 이사회 의 조직 및 협의 중요 문제 등의 불명확성 - 회계·결산 용어 등 각종 개념의 국제적 개념과의 상이
토지 관리	- 토지이용권의 임대 기간 이전 취소에 대한 규정 없음
금융 및 외화	- 환율의 유형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조세	- 구체적 품목에 대한 명확한 세율 미규정 - 조세 종류에 따라 체류·거주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분쟁 처리 및 해산	- 분쟁 처리 규정의 지나친 단순화로 구체적 내용 없음 - 청산 재산의 평가 방식 및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표 3〉 북한에 유리한 법 규정

항목	문제점
설립 및 출자	- 기업 설립·등록 변경시 북한의 사실상 사전 승인이 필요 - 합영·합작 기업은 설립 신청인이 북한측 - 외국 투자가의 화폐 또는 현물 출자를 유도하는 경향 - 출자 재산을 북한 원화로 표시
노무 관리	- 외국인 투자 당사자의 기술자나 제3국 기술자 고용 승인의 까다로움
경영 활동	- 등록 자본의 증자는 가능하나 감자는 불가능하여, 자유로운 경영 활동 저해 - 물자 구입이나 제품 판매시 가격·수량 결정의 불리
토지 관리	- 토지이용권의 반환시 토지 임대 기관이 인수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임차자 부담으로 토지 정리 필요 - 토지 관련 비용은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 - 토지이용권 취소: 불가피한 경우 북한 당국이 취소 가능 규정
금융 및 외화	- 외화 규제의 극심(외화 현금의 유통 근비, 외화 관리 기관의 결제 통화 지정 등) - 자금 결제 계좌의 잔고에 대해 이자 미지불 - 외화관리법 위반시 지나치게 엄중한 제재 조치 - 외국인 증업원은 합법적 소득의 60%만 해외 송금 가능
조세	- 조세상 원천징국 과세 원칙의 문제 - 북한 거주 외국인의 북한밖 재산 상속시 상속세 납부
분쟁 처리 및 해산	- 중재·재판의 경우 북한의 이질적 민사 소송 절차의 이해 부족 및 이에 따른 불공정 판결 가능성 - 합작 기업의 경우 해산시 외국측 투자 재산은 북한의 소유가 됨 - 기업의 관련법 위반시 북한 당국이 기업을 중지·해산시킬 수 있음

그리고 중국·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 상당한 손질을 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 경제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여 투자 관련 법안 자체가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투자 환경이 불리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과 투자 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지만, 북한과는 그러한 협정을 맺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북 사업에서 제도적 장치의 미

비는 북한에서의 투자 위험을 높이게 되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을 방해하게 된다.

또 중국의 경우 대만·홍콩을 위시한 전 세계의 중국인들의 對중국 투자를 장려해왔으며, 이를 위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투자 관련 법 규정에서는 한민족의 對북한 투자에 대한 특혜 조치가 전혀 없다. 남한 기업이 對북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중국 및 베트남과 같

은 국가에 대한 투자 정보를 북한과 비교하여, 이들 국가에 비해 불리한 규정의 철폐 및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등한 협상 태도의 견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 장치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다.

〈표4〉 북한·중국 및 베트남의 투자 관련 비교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북한	중국	베트남
세제 혜택	기업소득세	○	△	○
	소득세 감면	○	○	○
	개인소득세	○	△	○
	관세	○	△	○
	송금세	○	△	△
생산 비용	노동력(임금·질)	○	△	○
	지대·임대료	○	△	△
경영 관리 제약	물자 구입	×	△	○
	제품 판매	×	△	△
	외환 관리	×	○	△
	노무 관리	△	△	△
정치·사회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	△	△
	개혁·개방 의지	×	○	○
인프라 시설	수송망	×	△	×
	전력	×	△	×
	통신	×	△	×
시장 발전성	내수 시장	×	○	△
	수출 시장 접근	×	○	△
	외자 도입 성과	×	○	△

자료: 남궁 영(1997. 7). "북한 경제 개방 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경제특구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p. 72.

〈표 5〉 경쟁국과 비교한 북한 법 규정의 문제점

항목	문제점
노무 관리	- 북한에서는 직접 고용 및 선별 채용이 불가능 - 해고시 노력 알선 기관 및 직업동맹과 합의해야 하는 부담 - 중국·베트남과 달리 노동 규정에 최저 임금 수준이 명기
경영 활동	- 합작 기업의 경우 이윤 분배를 합작 제품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는 중국과 차이
토지 관리	- 토지 이용의 제한성(토지이용권의 양도·저당에서 중국은 명의 변경 등기만 하면 되나, 북한은 사전 승인이 필요)
조세	- 북한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미체결 - 개인소득세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규정

규정들간의 불일치

북한의 법 규정 상에 보이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러 법 규정들간의 불일치가 종종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관련 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과 하위법, 즉 합영기업법·합작기업법·외국인기업법이 서로 상충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하위법간에 법 규정 상의 상이가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북한의 투자 관련 법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 등의 경우 북한 국내법의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

북미 관계의 진전 등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의 대북 사업에 합작 형태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한 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북한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 외견 상으로 미국 기업들의 對북한 투자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제품의 저급, 북한 지역 투자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외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북한과 교역 및 투자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테러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제공은 아직 실행되기 어려우며, 이를 통한 북한 경제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추가적인 對북한 경제 제재 해제 조치 내용 및 시기가 북한 대외 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 일부 해제 조치와 북한 대외 경제 회복의 중요한 매개 고리가 바로 남북한 경험 활성화라는 점이다. 먼저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 해제는 장기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對북한 진출을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불리한 투자 환경이라는 북한의 특성상 외국 기업의 對북한 진출은 그다지 활발

〈표 6〉 북한의 투자 관련 법규간 불일치

항목	문제점
노무 관리	- 노동력 부족시 타 지역 노력 알선 기관의 보장 여부가 「노동규정」 12조와 14조에 달리 해석됨 - 노동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사회주의노동법」의 내용을 원용(우리 기업에 불리한 내용 많음)
경영 활동	- 재투자시 소득세의 반환 규정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종류별로 규정이 상이 또는 모호
금융 및 외화	- 북한 내에서 얻은 북한원의 외화로의 전환 어려움(「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6조·20조의 차이)
분쟁 처리 및 해산	- 분쟁 처리 및 신소청원에 대한 법규간 불일치 존재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對북한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본궤도에 오른다면, 외국 기업은 이를 북한 경제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대북 진출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으로서의 남한 기업이 북한과 경제 협력을 활발히 수행한다면, 이를 북한이라는 사회의 안정성 제고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험의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외국 기업은 북한 진출에 많은 위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투자 유치 및 경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남북한 경험 활성화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과제는 당

연히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정부간에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 상의 정비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 차원에서 위험 관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 작성에서 되도록 명확한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동시에 북측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최소화해야 한다.

업계 전체적 입장에서는 대북 사업의 조정을 위해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업계 전체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의 작성이나 또는 각종 정보의 축적 및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9**

<부록>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

명칭	제정 시기	주요 내용
· 합영법*	1984. 9. 8	-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관련 기본 규정(제26조)
· 합영회사소득세법*	1985. 3. 7	- 합작투자법인소득세 관련 규정(제8조)
· 외국인소득세법*	1985. 3. 7	- 북한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관련 규정(제10조)
· 합영법 시행세칙*	1985. 3. 20	- 합영법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제10장 71조)
· 합영회사소득세법 시행세칙*	1985. 5. 17	- 합작투자법인세 세부 시행 규정(제11조)
· 외국인소득세법 시행세칙*	1985. 5. 17	- 외국인소득세에 관한 세부 시행 규정(제14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	1990. 9. 5	- 소유 관계를 기초로 재산 관계와 이에 관련된 인격적 관계를 규정(제4편 271조)
· 사회주의 상업법	1992. 4. 9	- 사회주의 상업에 관한 상품 유통 관계 규정(제9장 96조)
·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 외국 투자 유치 관련 기본법(제22조)
· 외국인기업법	1992. 10. 5	- 외국인 기업의 설립·경영·청산·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 규정(제31조)
· 합작법	1992. 10. 5	- 합작 기업의 설립운영에관한 기본 규정(제21조)

주: *는 개정전 또는 개정후의 법규를 나타냄.

명칭	제정 시기	주요 내용
· 합영회사재정부기 계산 규정세칙	1992. 10	- 합영 회사의 경영 계산에 관련된 재정 부기 계산 규정(제6장 21조)
· 합영법시행세칙 (개정)*	1992. 10.16	- 합영법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제10장 104조)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 1.31	- 기본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기본 세제 규정 (제8장 56조 및 부록)
· 외화관리법	1993. 1.31	- 외국환 관리 기본 규정(제5장 32조)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1.31	-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운영에 관련된 기본 규정(제7장 43조)
· 지하자원법	1993. 4.8	- 지하 자원의 탐사와 개발 · 이용을 위한 규정(제5장 51조)
· 토지임대법	1993. 10.27	- 외국 투자가 및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 절차와 조건 규정(제6장 42조)
· 세관법(개정)	1993. 11.17	- 세관 검사 및 관세에 관한 규정(제5장 51조)
· 외국투자은행법	1993. 11.24	- 외국 투자 은행 설립 운영에 대한 규정(제5장 32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 규정	1993. 11.29	-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에 대한 규정(제21조)
· 외국투자기업 노동 규정	1993. 12.30	- 외국 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노동 보수, 노동 조건 등에 대한 규정(제8장 48조)
· 합영법(개정)	1994. 1.20	- 합영 기업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제5장 47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 기업 상주대표 사무소에 관한 규정	1994. 1.21	- 외국 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30조)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 규정	1994. 2.21	- 세금법 집행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제8장 79조)
· 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1994. 3.27	- 외국인 기업에 관한 세부 시행 규정(제8장 80조)
· 자유무역항 규정	1994. 4.28	- 자유무역항에의 입출항 및 시설 이용 절차(제4장 28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 규정	1994. 6.14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인 체류 및 거주에 관한 규정 (제21조)
· 외화관리법 시행 규정	1994. 6.27	- 외국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제4장 61조)
· 토지임대법 시행 규정	1994. 9.7	- 토지 임대 조건에 관한 세부 규정(제6장 109조)
·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1994. 12.2	- 외국 투자 은행에 관한 시행 규정(제6장 68조)
· 대외경제계약법	1995. 2.22	- 무역 · 투자 · 봉사와 관련된 대외 경제 계약 규정(제5장 42조)
· 중재법	1995. 3	- 중재에 의한 분쟁 심리 해결 절차 · 통제(제8장 86조)
· 보험법	1995. 4.6	- 보험 관계 기본법으로 보험 당사자, 보험 계약 · 보상 관계 등 규정(제5장 47조)

주: *는 개정전 또는 개정후의 법규를 나타냄.

명칭	제정 시기	주요 내용
·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1995. 6.28	- 세관 통과 질서와 특혜관세제도(제5장 60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책임자 대리업 무규정	1995. 7.13	- 중계 운송에 있어서의 화주의 편의를 보장하고 중계 화물의 원만한 수송을 위한 대 리업에 관한 규정(제29조)
· 합영법 시행규정	1995. 7.13	- 새로 개정된 합영법의 세부 사항 규정(제9장 158조)
· 재정법	1995. 8.30	- 화폐 자금 조성 및 분배 이용에 관련한 질서 규정(제5장 55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건 물양도 및 저당규정	1995. 8.30	-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건물 양도(임대차,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및 저당에 관 련한 규정(제6장 64조)
· 대외민사관계법	1995. 9.6	- 섭외적 재산 · 가족 관계의 준거법, 국제 민사 소송 · 외국 판결 등의 집행에 관한 규 정(제5장 62조)
· 합작법 시행규정	1995. 12.4	- 새로 개정된 합작법의 세부 사항 규정(제7장 132조)
· 외국인투자기업 부 기계산규정	1995. 12.4	-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통일적 부기 계산 절차와 방법(제38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1996. 2.14	- 지대내 가공 무역을 위한 심사 · 계약 이행 규정(제43조)
· 외국인투자기업 명 칭제정규정	1996. 2.14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호 제정 · 권리에 관한 규정(제16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 록규정	1996. 2.14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 사회주의 재산 관리법	1996. 3.21	- 사회주의 재산 관리의 원칙과 절차 · 방법 등(제7장 65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 인조각 및 등록규정	1996. 3.28	-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감의 조각, 등록 및 이용 질서를 규 정(제25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 및 경 영규정	1996. 4.30	-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질서를 규정(제4장 31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1996. 4.30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광고 활동을 규정(제19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	1996.6.18	- 외국에서 지대에 출입시의 검역에 관하여 규정(제19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1996.7.15	- 중계 무역품의 반출입, 보관 및 가공 규정(제4장 26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1996.7.15	- 지대안의 청부 건설에 대한 제도와 질서 수립(대상 건설의 주문 설계/준공 · 인도) 에 관한 규정(제5장 63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1996.7.15	- 지대에서의 관광의 보장과 관리를 규정(제5장 35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 규정	1996.7.15	- 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투자 관련 절차와 편의 제공을 위한 대리인의 업무 등 에 관하여 규정(제25조)

명칭	제정 시기	주요 내용
· 외국투자은행 부기 계산규정	1996.7.15	- 외국 투자 은행의 부기 문서 작성 및 계산 방법 · 결산 규정(제5장 70조)
· 외국인투자기업 부 기검증규정	1996.7.15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에 대한 검증(제30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 규정	1996.7.15	-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화폐유통체계와 질서(제26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경계통행검사규정	1996.7.15	- 지대의 경계 통행 검사 방법과 질서를 규정(제18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1996.7.15	- 지대의 자동차 등록 및 기술 검사에 관하여 규정(제15조)
· 외국기술도입규정	1996.8.11	- 외국의 생산 · 과학 기술 · 기술 비결 등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제20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	1996.9.1	- 지대내 상품(생산 수단, 소비재)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제정과 관리를 위한 세부 규 정(제4장 31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기업소관리운영 규정	1996.11.23	- 지대내 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와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제6장 41조)
· 토지 · 건물의 출자 규정	1996.12.30	- 북한의 토지 · 건물 출자 절차와 요건(제16조)
· 임대 토지 부착물의 이전보상규정	1996.12.30	- 임대 토지 부착물의 이전시 보상비 지불 절차 방법(제23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통계규정	1997.4.12	- 지대내 통계의 작성 · 관리에 대한 규정(제5장 45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내편의봉사업 규정	1997.4.12	- 지대내 가내 편의 봉사업의 영업을 위한 절차와 방법(제22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조선원대부규정	1997.4.12	- 지대 내에서 북한원의 대출 절차와 담보 설정, 이자, 채권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 장 39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창설 및 운영규정	1997.5.17	- 북한 기관 · 기업소가 지대내 투자 기업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제22조)
· 무역법	1998.3.	- 북한의 대외무역체계와 질서 규정(제5장 58조)
· 에너르기관리법	1998.5.	- 에너지 생산 · 공급 · 관리 · 교류 질서 규율(제4장 34조)